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8.

발 의 자 : 김희정 · 이인선 · 김승수
김대식 · 서지영 · 정성국
김도읍 · 박준태 · 이종배
김은혜 · 김태호 · 이현승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,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 최근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·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. 또한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는 ‘장기간의 치료’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

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, 난임치료
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·가
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44조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7호 중 “8세”를 “12세”로, “2학년”을 “6학년”으로 하고,
같은 항 제7호의3 중 “장기간의 치료가”를 “치료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제44조(휴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만 <u>8세</u> 이하 또는 초등학교 <u>2학년</u>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된 경우	7. --- <u>12세</u> ----- - <u>6학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
7의2. (생 략)	7의2. (현행과 같음)
7의3. 불임 · 난임으로 인하여 <u>장기간의 치료가</u> 필요한 경우	7의3. ----- <u>치</u> <u>료가</u> -----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